

의안 번호	181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10. 1.(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10. 14.(목)

2. 제안설명 요지(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가. 제안이유

-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를 고려하고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고자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일본어식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 현행 : 재직10 ~ 20년(10일), 20 ~ 30년(20일), 30년 이상(20일)
 - 개정 : 재직 10년이상 총 60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 정비

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30조3, 제30조4, 제4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경)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를 고려하고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고자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운용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상위법 위배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 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